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③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의 지역의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3조(징계 전 학생생활지도 방법) 학생의 학교 내·외 생활에서 문제행동 발생 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 단계별 조치를 따른다.

1. **경고 (1단계):**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및 상담 (2단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2차 경고 및 학부모 상담 안내를 실시한다. 생활교육의 방편으로 성찰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나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쓰도록 강제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3. **학부모 상담 (3단계):** 담임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교실 안, 지도만으로 행동수정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내교 및 면담을 요청하여 상담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급 시 바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상담교사 상담 (4단계):** 교실 내에서 수업 방해 및 교사의 지도 불응으로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 교실 밖으로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실로 이동시켜 상담실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5.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5단계):** 학부모 상담, 상담교사 상담 실시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담임교사나 생활관련부장의 판단으로 5단계 생략 후, 6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6. **징계 (6단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14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 방법) 학생 징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교 내 상담·교화와 봉사의 예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교구 정비
 -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4)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사회봉사의 예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5.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6조(징계의 기준) 학생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3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14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5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교의적)	○	○	○	
1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8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9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0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2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2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1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 ①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19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20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21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최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지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제23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교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